

의안번호	2209186
의 퇴 인	임호선의원
회 답 일	2025.4.16.
추계번호	25D176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¹⁾에 손해배상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6억 2,800만원, 2030년 1억 8,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73억 4,100만원(연평균 14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어린이놀이기구 보험가입 사실 게시 (안 제21조제2항 신설)	6,628	169	177	181	186	7,341	1,468

주: 1. 어린이놀이기구 보험가입 사실 게시(안 제21조제2항 신설)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국가 등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 1개소 당 2개의 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표지판의 설치 개수,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1)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기구를 의미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제2항 (보험가입 등) 신설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제2항 (보험가입 등) 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손해배상보험가입 사실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https://www.cpf.go.kr>)’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 종류는 20종으로 분류
 -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학교, 학원, 놀이제공 영업소, 주상복합, 박물관, 종교시설, 자연휴양림, 하천, 야영장, 공공도서관
 - 2024년 기준 어린이놀이기구는 총 83,791개소로 추정되며, 이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30,655개소로 추정²⁾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개소 수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어린이놀이기구

- 도시공원(12,135개소), 아동복지시설(409개소), 어린이집(6,521개소), 유치원(5,108개소), 박물관(93개소), 자연휴양림(135개소), 하천(81개소), 공공도서관(50개소), 학교(6,123개소)³⁾의 합계
-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당 2개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련 안내표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현황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본 추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신규로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⁴⁾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손해배상보험가입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인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손해배상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수량과 안내표지 단가를 곱하여 산출
 - **(설치 수량)**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사실 안내표지 설치수량은 2026년 64,414개, 2030년 1,734개로 추정

설 종류를 기반으로 추정

3)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하여 추정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1.9%	2.0%	2.0%	2.0%	2.0%

- 2024년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개소 수는 총 30,655개로 추정
- 추계기간 중 2.5%⁵⁾ 증가하며, 2026년 첫 해에 당시 시점의 설치대상 어린이놀이시설에 안내표지 설치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전년대비 증가량만큼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사실 안내표지 설치 수량 추정: 2026~2030년

(단위: 개)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설치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수	32,207	33,012	33,837	34,683	35,550
전년대비 증가량(a)	32,207	805	825	846	867
설치 수량(=a×2)	64,414	1,610	1,650	1,692	1,7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안내표지 단가) 보험가입 사실 안내표지의 단가는 2026년 102,899원, 2030년 107,056원으로 추정
 - 안내표지의 제작단가는 1개당 99,000원(2024년 기준)⁶⁾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3]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사실 안내표지 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안내표지 단가	102,899	104,957	107,056	107,056	107,0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이 2022년 기준 29,200개소로 추정되었고 2024년 30,655개소로 연평균 2.5% 증가

6)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 윤정초롱유치원의 놀이터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한 수의계약(2024년)의 단가를 참고

- 추계결과, 어린이놀이시설에 손해배상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6억 2,800만원, 2030년 1억 8,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73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안내표지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설치 수량(a, 개)	64,414	1,610	1,650	1,692	1,734	—
안내표지 단가(b, 원)	102,899	104,957	107,056	107,056	107,056	—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6,628	169	177	181	186	7,3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가 등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 당 2개의 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표지판의 설치 개수,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